

「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1. 23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1(목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)

가. 대형화되고 예측이 곤란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자율방재단(협의회)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명칭을 규정함. (안 제2조)
 - 명칭은 “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 이라 함)이라 함.
- 방재단 구성을 규정함. (안 제3조)
 - 방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명시함.
- 방재단의 임원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)
 -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 및 대표하고, 간사는 회계 담당 및 회의 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

- 방재단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7조)
 -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
- 방재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9조)
 -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평창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.
- 방재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. (안 제11조)
 - 단장 및 단원은 기부행위나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중심의 방재단을 구성, 효율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를 구성원으로 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 - 단원은 200인 이내로 하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,
 - 임원은 단장, 부단장,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,
 - 단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,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또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, 읍·면 대표와 전문가를 회원으로

단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,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, 장비, 품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기타 방제단의 운영, 예산지원, 금지행위,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시 자금지원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,
- 기존의 「평창군 수방단 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 위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다. 결과적으로
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,
-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조례안 1부. 끝.